

#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53
----------	-----

제출년월일 : 2016.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지붕 제설·제빙 의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은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조문 일부 수정

나.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다. 제설·제빙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4.14.~5.4.)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사항(비심의대상)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장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

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제설·제빙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의 제목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제설·제빙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삭제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삭제

제8조의 제목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를 “(제설·제빙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제설·제빙 도구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sup>2</sup> )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sup>2</sup>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 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sup>2</sup>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p> <p>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p>	<p>제2조(정의) ----- ----- 뜻은 다음 각 호와 --.</p> <p>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p> <p>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p>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

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유형 또는 거주·점유 특성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신 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 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 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 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 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 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 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 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 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 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부분까지의 구간(별표 1 예시  
도와 같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  
로부터 통행에 큰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은  
24시간 이상을 지체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도로여건, 지역특성, 건축물  
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  
정 할 수 있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  
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  
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  
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  
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  
시해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  
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  
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  
다.

② 삭제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  
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  
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  
다.

② 삭제

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제설·제빙 방법) ①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신 설>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  
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9조(제설·제빙 도구비치) 건  
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  
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본조신설 2015.11.30.]

## □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대상 시설물의 구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
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연락처	(033) 330 - 2406